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징수대상에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추가〉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46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징수대상에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추가	2
[참고1]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11
[참고2]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관련 규정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0. 20.

다. 회부연월일 : 2025. 10.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방송채널사업자의 사업규모,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징수대상에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추가

가. 주요 내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으로서 「방송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조성) ①·② (생략)	제25조(기금의 조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 ----- ----- ----- ----- ----- ----- -----.
<신 설>	1.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④ ~ ⑨ (생략)	업자 2. 「방송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④ ~ ⑨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¹⁾.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²⁾는 ①지상파방송사업자, ②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③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전문PP)에게는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징수율(6% 이내)을 곱한 분담금을 징수하고,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⑤위성방송사업자, 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사업자)로부터는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징수율(6% 이내)을 곱한 분담금을 징수하며, ⑦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PP)로부터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징수율(15% 이내)을 곱한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음([참고2]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관련 규정).

○ 개정안은 이러한 분담금 징수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³⁾가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이하 “복수채널사용사업자”라 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복수채널사용사업자(Multiple Program Provider, MPP)란 2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소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방송프로그램

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④SO, ⑤위성방송사업자, ⑥IPTV, ⑦홈쇼핑PP에 대하여는 종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분담금을 징수하였으나, 2025년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의 개편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개정되었음.

3) 2026년 기준 방미통위에 승인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18개(종편·보도PP 6개, 홈쇼핑PP 12개)이며,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총 236개임.

램을 제작하여 자체 채널에 편성하거나 유료방송사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한편 방송통신의 진흥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려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⁴⁾하려는 것임에도 분담금 징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사업규모, 매출액, 점유율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위임할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 및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2024년 기준 매출액 기준 상위 6개 복수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과 같음.

< 2024년 방송사업 매출액 상위 6개 MPP 현황 (단위: 억 원) >

사업자명	채널수	주요 채널명	방송매출액	광고매출액
씨제이이엔엠	15	tvN, Mnet, 투니버스 (홈쇼핑 제외)	8,342	3,036
스튜디오프리즘	3	SBS Food, SBS Plus, SBS fun E	1,796	435
에스비에스미디어넷	7	SBS Sports, SBS Biz, SBS GOLF	1,549	392
엠비씨플러스	5	MBC ON, MBC Dramanet	1,466	718
케이티이엔에이	13	ENA, 키즈톡톡플러스, ONT	1,112	655
스포티비	8	SPOTV, SPOTV Prime, SPOTV K	1,110	188

※자료: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등록 현황(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 '25.4.),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방통위, '25.6.),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방미통위, '25.12.)

- 둘째,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홈쇼핑PP에 대하여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을,
중편PP, 보도전문PP에 대하여는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을,
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정하고 있음.

-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시 방송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홈쇼핑PP, 중편PP, 보도전문PP가 아닌 SO, 위성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기준인지, 징수율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배타적 권리를 얻은 허가·승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는 배타적 사업권이 없는 등록사업자인 점 및 합리적인 부과기준 제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참고1]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정부로부터 정책적 특혜를 부여받은 ‘허가·승인’ 라이선스 사업의 이윤에 대한 반대급부로 운영되는 준조세로서, ‘등록’ 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그중에서도 특정 기업만을 타겟으로 부과하는 것은 산업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 **한국방송협회**와 일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현재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방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에게도 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해 사회적 책무를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개정안 제25조제3항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임.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공적책임을 부담하게 하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분담금 징수 대상에 대한 포괄위임 문제, 분담금 산정 기준의 타당성 여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신중검토 의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동일 취지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⁵⁾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분담금 징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개정안(이훈기의원안)과 달리, 최민희의원안은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분담금 징수 대상의 기준을 대강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다만, 최민희의원안은 개정안 발의 시점 기준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인 복수채널사용사업자가 1개였다는 점에서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5) 의안번호 제2203660호, 최민희의원 대표발의(2024.9.4.)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생략)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더한 금액-----.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신 설>	1.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신 설>	2.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여러 개의 방송채널

현행	개정안
<신설> ④ ~ ⑨ (생략)	<u>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u> 3. 「<u>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u>」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u>제공사업자</u> ④ ~ ⑨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226

참고 1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이해관계자		개정안에 대한 의견	비고
한국방송채널 진흥협회		○ 방발기금은 정부로부터 정책적 특혜를 부여받은 ‘허가, 승인’ 라이선스 사업의 이윤에 대한 반대급부로 운영되는 준조세로서, ‘등록’ 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그 중에서도 특정 기업만을 타겟으로 부과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가 다분함	반대
한국방송협회		○ 동일서비스를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MPP와 OTT등에도 방발기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사업자 간 공적책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수용
종합 편성 방송 채널 사용 사업 자	JTBC	○ 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해 부과 대상 확대 취지에 동의하나, “매출액 3,000억원 초과 사업자 등”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보완) 여러 개의 PP를 겸영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상 혼란 우려로 명확한 정의 필요, 전년도 매출액 3,000억원 초과 사업자로 명확히 규정 필요	조건부 수용
	TV조선	○ 지상파, 종편·보도PP와 동일 광고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고, 유사한 매출·영향력을 가진 일부 MPP에 기금을 부과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 ※ [기타의견] 미디어산업 변화에 따라 시장영향력이 큰 OTT, 포털 등의 사업자도 징수대상에 포함, 기금 용처 재검토 필요	수용
	채널에이	○ 제도 형평성과 기금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를 포괄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 ※ [기타의견] 기금 사용 또한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방송과 관련이 낮은 기관·사업군에 대한 직접 지원 최소화 필요	수용
	MBN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기금 제도 재검토를 위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세부 시행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 - (보완) 복수채널사용사업자의 명확한 범위나 매출액 산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기존 납부사업자 중복 부과 우려 ※ [기타의견] 기금 용처에 대한 검토 필요	조건부 수용

이해관계자	개정안에 대한 의견	비고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 방송콘텐츠와 통신망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모든 사업자 간 징수 형평성을 고려해, 영향력이 큰 PP뿐만 아니라 OTT, 포털사업자 모두 부과 대상이 되어야 함	수용
연합뉴스TV	○ 이번 개정법률안이 제도의 공정성, 형평성 등에 기여할 것 ※ [기타의견] 현행 분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종합 검토 필요 - 보도채널은 비상업적·공익적 채널(뉴스프로그램 비율 95% 이상)이므로 지상파·종편과 동일한 ‘광고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큰 부담. KBS1, EBS와 동일한 감경 기준 적용 필요	수용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1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기본징수율"이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감경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최초 분담금 징수율을 말한다.
② "최종징수율"이란 위원회가 해당연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를 위하여 감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 징수율을 말한다.
③ "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2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전국 단위 방송을 행하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를 말한다.

제3조(분담금 납부대상) ①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하는 분담금 납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3.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5. 「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6. 「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4조(기본징수율의 산정)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본징수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본징수율이 전년도 기본징수율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징수율을 해당연도의 기본징수율로 한다. 다만, 전년도 기본징수율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최종징수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최종징수율의 산정)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징수율을 기준 징수율로 하되, 사업자별 다음 각 호의 감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징수율을 산정한다.
1. 「방송법」 제43조의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3분의 1을 감경한다.
2.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기본징수율에서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가.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4를 감경
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미만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없는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5를 감경
다.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6을 감경
라.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8을 감경
3.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11.67%를 감경한다.
4. 중앙지상파 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추가 감경한다.
가.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2분의 1을 추가 감경
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

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 대비 당기순손실 비율 × 5)를 추가 감경
 "예시"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
 본징수율의 100분의 5(100분의 1 × 5)를 추가 감경

제6조(분담금의 산정) 분담금은 방송광고매출액에 최종징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경감된 금액을 차감한 후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
 터방송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을 포함한다.

제7조(수납기관 등)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
 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방송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
 정된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분담금 산정내역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기본징수율, 징수율 감경사
 유, 최종징수율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하거나 경감한 내역 및 분담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기본징수율의 산정 (제4조제1항 관련)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	기본징수율(%) 산정방법
1조원 초과	$[5.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text{조원}) \div 1\text{조원}\}] \times \text{조정계수}$ (6.0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으로 한다)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000\text{억원}) \div 9,000\text{억원}\}] \times \text{조정계수}$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500\text{억원}) \div 500\text{억원}\}] \times \text{조정계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00\text{억원}) \div 400\text{억원}\}] \times \text{조정계수}$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50\text{억원}) \div 50\text{억원}\}] \times \text{조정계수}$
50억원 이하	$[0.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div 50\text{억원})\}] \times \text{조정계수}$

비고

1. 해당사업자의 기본징수율 산정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속한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의 기본 징수율 산정방법에 따른다.
2. 조정계수는 방송사업 매출액 등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제3조제1호 및 제5호·제6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조정계수를 1로 하고, 제3조제2호·제3호·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0.069를 감경하여 조정한 0.931로 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9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담금 징수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분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징수율을 결정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한다)의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	(재무제표상 영업이익 + 재무제표상 분담금 납부금액 - 전년도 납부 분담금) × (방송서비스 매출액/전체 영업수익)
---------------------	---	---

2.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홈쇼핑방송매 출수익 -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	---	---

③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이 구분될 수 있도록 회계를 처리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산정내역과 근거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방송서비스 매출액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방송사업수익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수익으로 한다.

제4조(수납기관 등)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5조(분담금 과·오납금 환급 등) < 삭제 >

제6조(분담금 면제·경감사유 등의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감면금액 및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제2조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징수율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5/100
위성방송 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	일반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	IPTV사업자	
홈쇼핑방송 채널사용 사업자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1.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 겸업자 포함)	13/100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데이 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10/100

비고 :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방송법 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1개의 종합유선방송구역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방송서비스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은 방송서비스매출액에 구간별 징수율(매출액 100억 이하 구간에 1.0/100, 매출액 100억 초과구간에 1.5/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종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분담금을 징수하였으나, 2025년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의 개편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개정되었음.